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양도소득세
생산일자	2024. 08. 01.	**귀속연도**	
제목	취득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 거주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답변내용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상세내용			

[사실관계]

◯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 2023.07.20. B주택 취득

◯ 2023.07.31. A주택 준공일